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3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백종헌・김종양・서천호

박성훈 · 김예지 · 진종오

박정하 • 정희용 • 이헌승

김용태 · 김상욱 · 박준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기기산 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 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 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

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홍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료기기의 날) ① 국민의 건강 및 생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의료기기의 날) ① 국민
	의 건강 및 생명상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중요성
	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
	보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
	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
	<u>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료기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
	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
	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 관련 사
	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